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 대집행 》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86호)

2026. 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5186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 대집행 (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2

I. 한준호의원 대표발의(제2215186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한준호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1.

다. 회 부 일 : 2025. 12. 1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등).

3. 검토의견

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시설물 보수·보강 등 대집행 (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③ (생략) <u><신설></u>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1. <u>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u> 2. <u>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
<u><신설></u>	

현행	개정안
④ (생략)	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⑥ (현행 제4항과 같음)

현행법 제24조는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1항¹⁾은 관리주체²⁾로 하여금 제13조제6항³⁾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경우(제1호), 정밀안전점검⁴⁾ 또는 정밀안전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2.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된 경우
3.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3. “공공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4. “민간관리주체”란 공공관리주체 외의 관리주체를 말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긴급안전점검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붕괴·전도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해당 관리주체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제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진단⁵⁾ 결과 시설물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D등급 또는 E등급)⁶⁾으로 지정된 경우(제2호), 제22조⁷⁾에 따라 안전점검등⁸⁾을 실시한 자로부터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하며, 점검목적 및 점검수준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으로 구분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2. **정밀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점검 당시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며 시설물 주요부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의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장비를 이용한 조사를 실시하는 안전점검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2(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대상 안전등급 기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이란 각각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을 말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8]

시설물의 안전등급 기준(제12조 관련)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의 통보) ①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해당 시설물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

시설물의 중대한결합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제3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고,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외에 해당 시설물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리주체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 또는 제2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이하 “중대한결합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감독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시설물의 중대한결합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시설물기초의 세굴(洗掘), 부등침하(不等沈下)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기초의 세굴
2. 교량교각의 부등침하
3. 교량받침의 파손
4.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5.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파일의 파손·부식
6. 댐의 파이핑(piping: 흙·모래 등이 깎여 땅속에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구조적 균열
7.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
8. 하천시설물의 본체, 교량 및 수문의 파손·누수·파이핑 또는 세굴
9.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염분 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
10. 절토사면 및 성토사면(쌓기비탈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11. 그 밖에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교량 난간의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이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결함을 말한다.

1. 시설물의 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의 파손
2. 도로교량, 도로터널의 포장 부분이나 신축(伸縮) 이음부의 파손
3. 보행자 또는 차량이 이동하는 구간에 있는 환기구 등의 덮개 파손
4. 그 밖에 공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위의 결함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위의 결함

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설계도서 등의 열람) ①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제28조의2에 따라 등록한 안전점검전문기관(이하 “안전점검전문기관”이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이하 “건설사업자”라 한다) 또는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이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국방이나 그 밖의 보안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시설물은 관리주체나 관련 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정안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관리주체가 ①해당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또는 ②보수·보강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행 및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근 4년 동안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결함등의 연간 신규 발견 건수는 2022년 455건에서 2025년 1,567건으로 증가하였고, 보수·보강 등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건수⁹⁾도 2022년 57건에서 2025년 241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명령 또는 중대한결함등 통보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조치에 착수하지 않았거나, 착수 후 3년 이내에 완료하지 않은 수치의 합계를 말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 최근 4년간 중대한결함등 발견 건수 및 조치 미이행 건수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중대한결함등 발견 건수	누적	3,159건	3,969건	4,932건	6,499건
	당해 연도	455건	810건	963건	1,567건
조치 미이행 건수(B)		57건	108건	52건	241건

※자료: 국토교통부, FMS(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재 기준

*주- 중대한결함등 건수(누적): 2001년 이후 발견된 중대한결함등 건수의 합계

(1개 시설물에서 발견된 복수의 중대결함등도 별도 건수로 집계)

- 조치 미이행 건수: 각 연도 말까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중대한결함등의 건수

중대한결함등이 발생한 시설물에 필요한 보수·보강 등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노후화 등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바,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시설물 관리 전반에 권한과 책임이 있는 행정기관의 조치를 통해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한편, 현행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¹⁰⁾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1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 ①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거나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 제23조(긴급안전조치)는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기간 내에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 제24조(시설물의 보수·보강 등)는 시행령11)에서 조치명령 또는

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중대한 결함 등에 대한 보수·보강조치의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법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착수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 한다.

중대한결함등 통보 후 2년 이내에 보수·보강 등 조치에 착수하도록 하고 착수 후 3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도록 하여, 보수·보강¹²⁾을 긴급안전조치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되는 조치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긴급안전조치보다 시급성이 덜한 보수·보강 등 조치에 있어서도 대집행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긴급안전조치 및 보수·보강 등 조치 관련 규정 비교 】

	긴급안전조치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긴급안전 조치 또는 보수·보강 등 조치의 요건	○ <u>관리주체: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u> 받거나 시설물이 제 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u>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u> 를 하여야 함.	○ <u>관리주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u> 를 하여야 함.
		- 제1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30조(보수·보강 방법의 일반) ①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시설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②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시설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긴급안전조치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을 받은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되는 경우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 받는 경우	-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이 제16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등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D등급(미흡) 또는 E등급(불량)]으로 지정된 경우 - 제22조에 따라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긴급안전 조치명령 또는 보수·보강 등 조치 명령	○ 시장·군수·구청장 : 시설물의 중대한결함등을 통보받는 등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에게 시설물의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 주민대피 등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음. 이 경우 관리주체는 신속하게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명령 미이행시의 조치	○ 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함.	(개정안에서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주체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함. 1.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실행

	긴급안전조치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조치
		<u>속하게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u>이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이행 및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그 <u>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u>
명령 미이행시의 조치 관련 통보	○ 시장·군수·구청장 : 안전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개정안에서 신설)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 조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함.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알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관리주체의 책임이 원칙으로, 국가가 보수·보강 등 조치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 회피 및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위험 시설물로부터 공중의 안전 확보는 현행법 제23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명령 및 대집행 규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91